

# 직업성 암 업무상질병 업무처리요령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확대-

## 1 추진배경

- 직업성 암 등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질병은 전문(역학)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에 따라 처리기간 장기화
- 2018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절차 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입증부담 완화 요구에 따라 타 업종·직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확대 필요
  - 2018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환경연구원(구.직업성폐질환연구소) 「폐암인정경향(추정원칙 적용기준안)」 연구결과 제출

## 2 확대 방안

- (현행)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8개 상병\* 과 동일·유사한 직종 및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생략
  - \*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 ※ 「직업성 암 등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 시달」 업무상질병부-3561(18.7.9) 참조
- (확대) 국제암연구소, 국·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 ①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②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③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④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은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개별역학조사) 생략

- \*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 2018.12., “폐암인정경향” 직업환경연구원(구.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18.8.

### 3

## 대상 및 적용기준

### ○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1. 2009년 이전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석면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2. 석면 광업, 선박 수리업에서 직업적 석면 노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 ○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의 사용, 작업 중에 석면 함유 제품의 취급 업종에서 노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서 석면 노출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발생한 악성 중피종

### ○ 탄광부 · 용접공 · 석공 · 주물공 · 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구 분	적용기준
탄광부	지하탄광에서 근무 노출기간이 누적 10년 이상 ※지하 탄광에 한함 ※굴진, 채탄, 보갱, 운반, 적재 작업을 모두 포함한 누적 노출기간
용접공	직업적으로 용접작업 노출기간이 누적 10년 이상 ※배관공, 제관공은 제외(용접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석 공	직업적으로 석재가공(할석, 조각, 각자 포함) 노출기간이 10년 이상 ※석재부착(시공작업)은 제외(석재 가공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주물공	직업적으로 주물작업 노출기간이 10년이상
도장공	직업적으로 스프레이(분체) 도장 노출기간이 10년 이상(붓도장 제외)

○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빈혈,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벤젠 노출 직종에서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누적기간 이상 근무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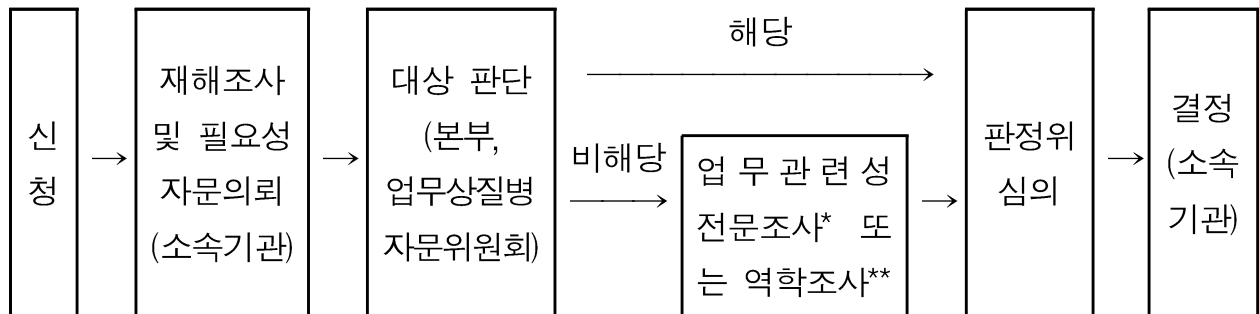
1. 2005년 이전 10년이상 코크스 오븐\*(화성공정) 작업자 : 현장 감독자 포함하며 코크스오븐 실링, 스트립 공정 수행자, 대정비 작업 수행자

\* 석탄을 일정한 크기의 코크스(탄 덩어리)로 만드는 화로

2. 2003년 이전 5년 이상 인쇄작업자
3. 2003년 이전 5년 이상 고무제품제조업에서 타이어 성형, 검사, 불량처리 공정 작업자
4. 2003년 이전 5년 이상 도장작업자(붓도장 제외)

## 4 처리 및 판단 절차

○ 처리 순서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수행(업무상 질병 심의 및 자문 규정 제3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수행(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 전문조사 미실시 대상 건이 판정위 심의 과정에서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역학)조사 의뢰

○ 대상 판단 절차

- 현행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방식(2인~3인, 개별전문가 서면 검토)과 달리 “업무상질병자문위원 5명이 참여하는 대면 회의”를 통해 협의 판단

- 소속기관은 위 대상 및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요양(유족)급여 신청(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직력확인자료,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을 첨부하여 본부(업무상질병부)에 자문 여부 및 자문기관 판단 의뢰